

‘19년 지정검사기관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개선[안]

2019. 6.



본 자료는 지정검사기관 설명회용 자료이며, ‘19년 평가지표는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 지정검사기관 평가개요	1
------------------------------	----------

II . 2019년 평가계획	13
------------------------------	-----------

III . 2019년 평가지표 개선[안] 요약	15
--	-----------

IV . 2019년 평가지표[안]	18
---------------------------------	-----------

I.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개요

1

목적 및 평가근거

□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관리 수준 및 업무수행 능력, 안전검사 위탁사업장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 평가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 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

추진방침

-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지정검사기관 (21개소)*에 대해 평가

* 평가계획을 공고일 기준 지정일이 1년 미만인 기관 제외

- ☐ 공단 민간평가센터(평가 전담조직)와 인증원내 전문부서와 평가반 구성

* 네트워크협력실 : 설명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계량지표 평가 등

* 안전인증부 : 안전검사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 실시

- ☐ 그간의 평가결과,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보강

- ☐ 고용노동부 정책추진방향 평가지표* 반영

* 평가지표 : 사고사망재해감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업무수행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지정검사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사업주의 우수기관 선택권 부여

3

'18년 평가결과

<'17년 및 '18년 평가결과>

○ 평가대상 '17년(17개소) 및 '18년(18개소) 실시

구 분	계	S	A	B	C	D
'18년	18	-	2 (11.1%)	13 (72.2%)	2 (11.1%)	1 (5.6%)
'17년	17	1 (5.9%)	2 (11.7%)	7 (41.2%)	6 (35.3%)	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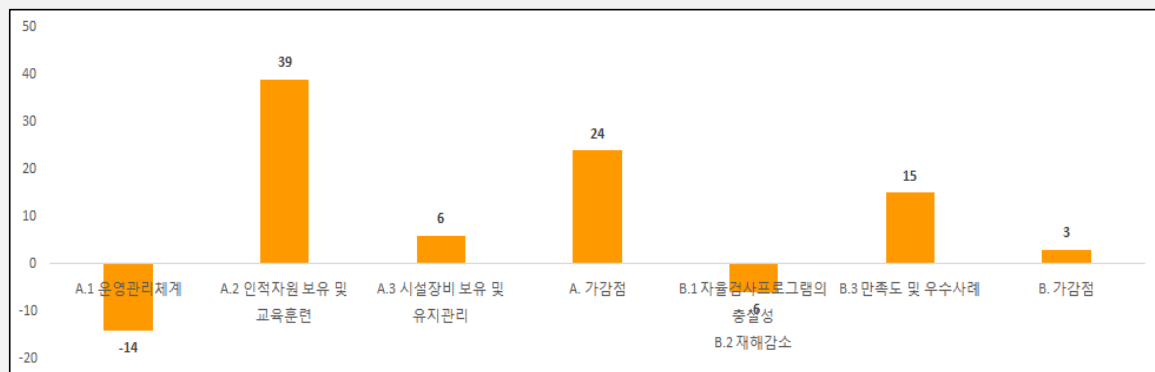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평가등급 변동사항 >

- 1) A등급 이상 기관 : '17년(3개소) → '18년(2개소), 1개소 감소
- 2) B등급 이상 기관 : '17년(10개소) → '18년(15개소) 5개소 증가
- 3) C등급 이하 기관 : '17년(7개소) → '18년(3개소) 4개소 감소

< 주요 항목별 점수 증감 내용 >

- 1) 운영관리체계 : '17년(41점) → '18년(27점), 14점 하락
- 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 '17년(113점) → '18년(152점), 39점 상승
- 3) 가감점(고용안정 노력도, 가점 30점) : 24점 상승
- 4) 만족도 및 우수사례 : '17년(105점) → '18년(120점), 15점 상승

평가항목		배점	'17년	'18년	증감
A.1	운영관리체계	60	41	27	△14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40	113	152	39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70	76	6
가감점(고용안정 노력도)		-	-2	22	24
운영체계 계		400	222	277	55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300	307	215	△6
B.2	재해감소	100		86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	105	120	15
가감점		-	-3	-	3
업무성과 계		600	409	421	12
계		1,000	631	698	67



① 평가 항목별 분석

1) (A.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 가) '17년(22점) → '18년(7.5점), 14.5점 하락
- 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0점” 부여
- 다) 주요 미흡사항 : 항목누락, 문서화 미실시

2) (A.2.4)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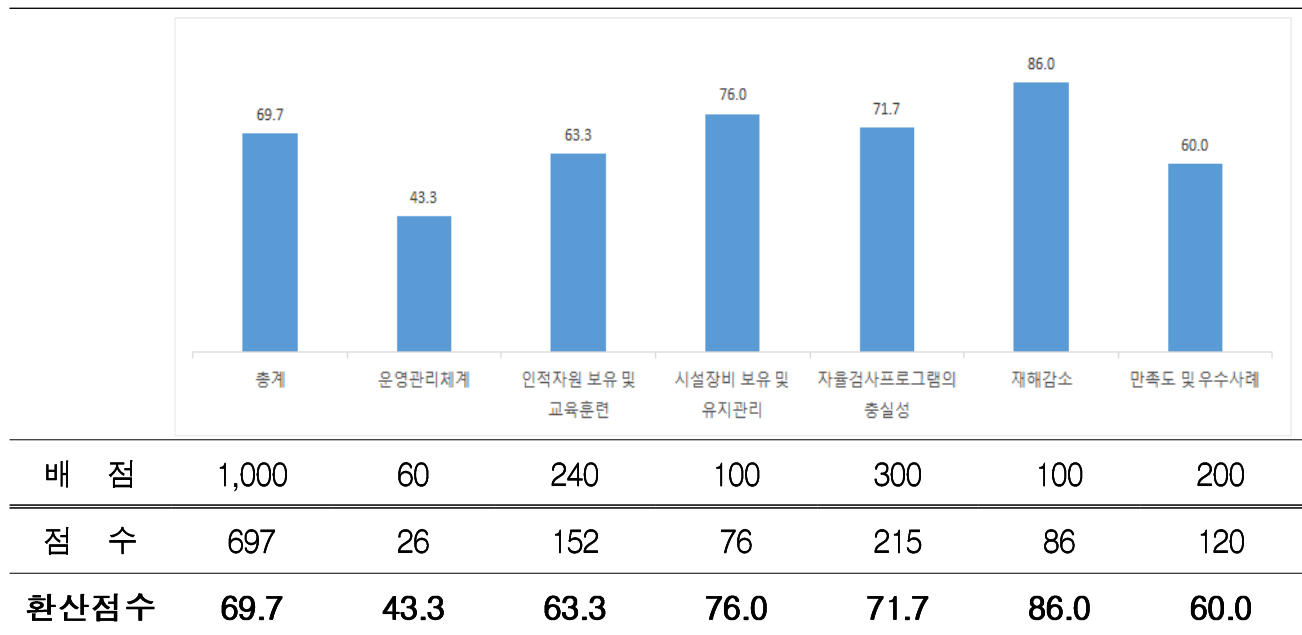
- 가) 장비 활용수준의 향상 활동 → 사용방법 숙지상태로 지표 변경
- 나) '17년(22점) → '18년(46점), 24점 상승

3) (A.6.1) 고용안정화(가감점) : 24점 상승

4) (A.3.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 '17년(75점) → '18년(91점), 16점 상승

5) (A.3.2) 자율검사 우수사례 : '17년(30점) → '18년(29점), 1점 하락

2 평가 항목별 수준 분석



1) 우수분야(1) : 재해감소(86.0)

2) 보통분야(2) :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76.0),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71.7)

3) 미흡분야(3) : 운영관리체계(43.3),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63.3) 만족도 및 우수사례(60.0)

4)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감소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5) 추가장비 확보, 장비 관리 및 검교정, 검사업무 수행시 장비활용은 보통으로 평가됨

6) B.1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충실성」 항목 중 B.1.1 「검사수행계획, B.1.3 「업무처리 규정 준수여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검사 결과서에 합부판정,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사업주 통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7) 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운영관리체계, 추가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우수사례의 계획 및 실행이 미흡

마. 등급상승기관 평가 항목별 점수 분석

평 가 항 목		배점	‘17년	‘18년	증 감
A.1	운영관리체계	60	37	24	△ 13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40	91	159	68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64	80	16
가감점(고용안정 노력도)		-	-	18	18
운영체계 계		400	192	281	89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300	253	235	74
B.2	재해감소	100		92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	83	113	30
가감점		-	-4	-	4
업무성과 계		600	332	440	108
계		1,000	524	721	197

1) 등급 상승 현황

가) B → A등급 : 1개 기관

나) C → A등급 : 1개 기관

다) C → B등급 : 4개 기관

라) D → C등급 : 1개 기관

2) 운영체계분야 : 89점 상승

가) 내외부 전문화교육 실적,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실적 점수 상승

나) 고용안정 노력도(가점) 상승

3) 업무성과분야 : 108점 상승

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우수사례 상승

나) 전년도 평가 후 운영체계, 업무성과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③ 평가항목별 세부 분석

◎ 운영체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균
		400	276
A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30	8
A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30	18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60	29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90	57
A2.3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30	20
A2.4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60	46
A3.1	검사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60	39
A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50	37
A4.1	평가년도 포상실적	0~10	0
A4.2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실적	0~-80	-5
A4.3	평가년도 시정조치·경고처분 실적	0~-20	0
A5.1	종합검사지원	0~10	1
A6.1	고용안정 노력도	0~30	26

1) (A.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평가점수	0	5	10	20	30
기관수	2	11	3	1	1

가) 총 18개 기관 중 운영방침(8개 항목)과 운영표준(3개 항목)의 필수 사항 중 2가지 이상 누락된 기관이 16개 기관으로 89%를 차지함

나) 운영방침, 운영표준, 사업계획의 수립 등이 미흡한 상태임

다) 2개 기관은 기관의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수립·보유하지 않음

라) 지정검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비해 지역적 거리 등으로 인해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힘든 실정임

2) (A.1.2) 부서별·개인별 업무관리체계

평가점수	0	10	20	30
기관수	2	2	10	4

- 가)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78%를 차지함
- 나) 14개 기관(78%)이 홈페이지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기관의 부서·개인별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다) 4개 기관은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인력 변동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분장을 변경하지 않음.

3)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점수	0	10	20	30	40	50	60
기관수	5	1	1	4	1	2	4

- 가)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72%를 차지함
- 나) 전문인력 추가확보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포항소재 사업장 담당 검사기관 2개소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1개소 , 지역 검사기관 1개소임

4)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평가점수	0	15	30	45	60	75	90
기관수	1	1	1	1	10	2	2

- 가) 배점(90점) : 내부교육(60점) + 외부교육(30점)
- 나) 4개 기관(24%)이 내부교육(분기별 2회 이상) 실시가 미흡함
- 다) 외부전문화교육(연간 16시간 이상)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라) 내·외부교육 평가기준

5) (A.2.3)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평가점수	0	10	20	30
기관수	3	4	1	10

- 가)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활동(자체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83%를 차지함
- 나) 10개 기관(56%)는 검사직원 전원이 참여하여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5개 기관(28%)은 일부 검사직원이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다) 3개 기관은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6) (A.2.4)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평가점수	0	20	40	60
기관수	0	1	11	6

- 가) 법정장비 사용방법 및 숙지상태 100% 이상인 기관이 6개 기관, 33%를 차지함
- 나) 12개 기관(67%)의 검사직원이 1개 이상의 법정장비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상태 미흡함
- 다)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상태가 미흡한 장비로는 측정결과 기록란이 없는 소음측정기,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와이어로프테스터 등 검사 결과서에 측정결과가 기록되지 않는 장비임

7) (A.3.1)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점수	25	30	35	38	40	48	50
기관수	1	3	3	2	3	2	4

- 가) 배점(50점) : 추가장비 확보(10점) + 유지·관리의 적정성(40점)
- 나) 추가 장비 4종 이상 확보 +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기관 : 4개 기관(33%)
- 다) 장비운영지침은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검교정 일부가 누락된 기관은 12개 기관(67%)임.
- 라) 주요 추가확보 장비로는 레이저거리측정기, 레이저레벨기, 광파기, 열화상카메라, 산소농도 측정기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8) (A.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실적

평가점수	0	20	30	40	50
기관수	3	1	0	6	8

- 가) 검사결과서에 측정결과의 기록누락이 없고,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기관은 8개 기관(44%)임.
- 나) 검사결과서에 측정결과의 기록 누락이 5% 이상인 기관은 4개 기관(23%)임

9) (A.5) 종합기술지원 실적

평가점수	0	5	10
기관수	16	0	2

- 종합기술지원을 실시한 기관은 2개 기관임

10) (A.6) 고용안정 노력도

평가점수	0	5	10	20	30
기관수	2	0	0	1	15

- 15개 기관(83%)의 검사수행요원이 정규직임

◎ 업무성과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균
		600	421
B.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	50	38
B.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50	45
B.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여부	100	52
B.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100	80
B.2.1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100	86
B.3.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100	91
B.3.2	자율검사 우수사례	100	29
B.4.1	검사대상품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0~-100	0

1) (B.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

평가점수	0	25	50
기관수	4	1	13

○ 4개 기관이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 (B.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 서류 관리

평가점수	0	10	20	30	40	50
기관수	1	0	0	1	1	15

가) 배점 50점 : 검사서류 보존체계(20점) + 검사서류 보존 누락 여부(20점) + 검사서류 2년 보존년한 준수(10점)

나) 평가대상 18개소 중 15개소(83%)가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됨

다) 주요 감점사항

- 검사서 중 일부가 누락되어 10점 감점됨
- 검사결과서 누락이 없고, 보존년한 2년은 준수하고 있으나, 검사서류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지 않아 20점 감점됨

라) “0점” 기관은 실적없는 기관임

3) (B.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평가점수	0	40	70	100
기관수	2	6	10	0

- 가) 검사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준수 여부 확인 결과 「검사기준」 - 「합부판정 - 「합격표시방법」 순으로 자율검사 업무처리 규정 미준수 사례를 확인함
- 나) 검사기준 준수 및 합부판정,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사업주 통보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기관 자율검사프로그램 확인 심사시 지속 확인 및 보완 예정

4) (B.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점수	0	40	70	100
기관수	1	0	9	8

- 가) 현장 평가 결과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결과서와 불일치, 검사항목 누락이 없는 기관은 8개 기관(44%)임.
- 나) 9개 기관(50%)이 현장평가지 한단계 하향 평가되었으며, 검사기준 미준수가 주된 하향평가 사유임
- 다)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결과서 불일치, 검사항목 누락 7건 이상 기관은 실적이 없는 기관(1개소) 평가결과임.

5) (B.2.1)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성과

평가점수	0	50	100
기관수	1	3	14

- 가)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하향 평가된 기관은 3개 기관임
- 나) “0점”기관은 실적없는 기관임

6) (B.3.2) 자율검사프로그램 우수사례

평가점수	0	20	40	60	80	100
기관수	7	4	2	3	1	1

○ 우수사례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저조하게 평가됨

4 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 1) 검사결과서에 합부판정, 검사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사업주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검사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표개선
- 2) 대부분 기관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운영관리체계, 교육훈련, 우수사례 계획 및 실행이 미흡함

II. 2019년 평가계획

1 평가대상 및 평가대상기간

☐ (평가 대상) 지정검사기관 21개소*

* '19.5월 기준 지정일이 1년 미만기관 및 지정서 반납 기관 제외

☐ (평가 대상 기간) : '18.08.01~'19.07.31

2 평가주요 일정 및 추진 절차

☐ 주요 평가일정(안)

○ 평가 설명회 개최('19.6.5)

* 평가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 평가운영위원회 개최('19.6.20)

* 평가계획, 대상, 평가반 구성·운영, 평가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확정

○ 평가계획 공고('19.7.12 이전 예정)

* 「산안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에 따라, 평가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 공개

○ 평가반 구성 및 사전 워크숍('19.7월 중)

○ 평가 실시('19.8월 부터)

*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방법으로 실시, 필요 시 평가 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평가결과 기관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9.10월)

○ 평가운영위원회 개최('19.10월)

* 평가결과 보고(평가반→운영위), 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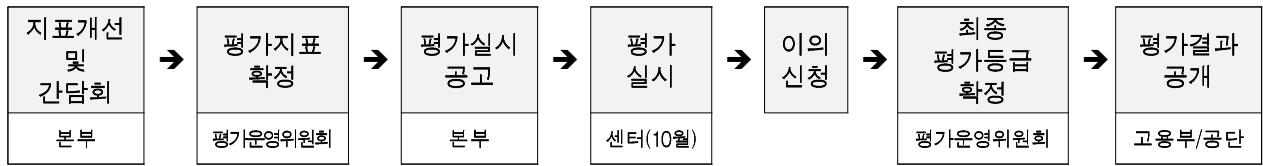
○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결과 통보('19.11.)

* 이의신청 내용은 공단 평가반에서 1차 검토 후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최종 평가결과(종합 평가보고서) 고용노동부에 보고('19.12월)

○ 평가결과 고용부 및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19.12월)

□ 추진절차



□ 평가실시

- 공단 민간평가센터에서 기관별 평가일정 지정·통보 예정이며 추후 공단 또는 기관 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
- 평가항목별 사전자료 작성 및 제출 (10월 중)
 - 사전자료 작성 양식 및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절차 운영

- 평가종료 후 기관별 평가점수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최종 평가등급(안)

평가등급	기준점수		
	(1안)	(2안)	(3안)
S등급	900점 이상	900점 이상	900점 이상
A등급	800점 이상~900점 미만	800점 이상~900점 미만	800점 이상~900점 미만
B등급	700점 이상~800점 미만	600점 이상~800점 미만	600점 이상~800점 미만
C등급	600점 이상~700점 미만	400점 이상~600점 미만	500점 이상~6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400점 미만	500점 미만
요약	100점 단위 등구간 점수 등급 적용	전년과 동일 하게 평가후 '20년도부터 1안 적용	C등급 점수 변경

□ 최종 평가등급 공개

- '19. 12월~'20. 1월 중 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 평가제외 기관은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명단만 공개

Ⅲ. 2019년 평가지표 개선[안] 요약

< 총괄 > 신설 2개, 항목 보장 4개, 삭제 1개

- 신설 : 전문성향상 지원실적, 자율검사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
- 보장 : 「가점」→「배점」 항목변경 2개, 배점 변경 2개, 고도화 3개
- 삭제 : 검사대상품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평가항목 신설 : 운영체계 2문항 신설

순번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문항수	배점	비 고
1	운영체계	A.5.1	전문성 향상 지원 실적	1	20	신설
2	업무성과	B.4.1	자율검사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	1	20	신설
3	운영체계	A.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	10	배점이동
4	운영체계	A.2.6	고용안정 노력도	1	30	배점이동
5	운영체계	A.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1	20	배점변경
6	운영체계	A.2.2	검사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1	30	배점변경
7	업무성과	A.3.1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1	20	고도화
8	업무성과	A.3.2	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1	30	고도화
9	운영체계	B.3.2	자율검사프로그램 우수사례	1	100	고도화

① (A.5.1) 전문성 향상 지원 실적(신설)

- 검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도 평가
-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실적, 자기개발 실적, 자기개발 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인적자원의 능력 향상

② (B.4.1) 자율검사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신설)

- 자율검사 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을 통해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 전체 검사대수 대비 불합격 판정수를 확인하여 평가
- 자율검사프로그램 위탁 수행 기관에서 정확한 판정을 유도

③ (A.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 컨소시엄을 통해 기관의 제한된 역량 극복
- 「가점」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변경
- 평가방법 개선 : 종합기술 지원 실적 건별 점수 산정(동일기관 1점, 타분야간 2점)

④ (A.2.6) 고용안정 노력도

- 검사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향상
- 「가점」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변경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명확화

⑤ (A.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 배점 30점 → 20점으로 축소
- 운영관리 체계 배점(60점)을 종합기술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평가

⑥ (A.2.2) 검사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 내부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여 배점 축소(60점 → 30점)

⑦ (A.3.1)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평가
- 평가방법 고도화 : 추가장비의 인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장비별 차등 평가기준 마련(타분야 법정장비 건당 5점, 기타장비 건당 3점)

⑧ (A.3.2) 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 법적 합부판정을 가늠하는 검사장비에 대해 관리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고시에 따라 관리토록 개선

⑨ (B.3.2) 자율검사프로그램 우수사례

- 일부기관에 평가점수가 편향될 수 있는 항목 개선
- 현수막 게시율, 간담회 개최율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

1 평가지표 변경 전 · 후 비교표(안)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000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400	
	A.1 운영관리체계 (60)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좌 동	30	좌 동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좌 동	30	20	
		항목이동 & 평가기준 변경(A.5.1→A.1.3)		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가점)	10(배점)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40)	2.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좌 동	60	좌 동	
		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2.2 감사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60	30	
			2.3 감사원 외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좌 동	
		2.3 감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좌 동	30	좌 동	
		2.4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좌 동	60	좌 동	
		항목이동(A.6.1→A.2.6)		2.6 고용안정 노력도	30(가점)	30(배점)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3.1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3.1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50	20	
			3.2 유지·관리의 적정성		30	
		3.2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 활용 실적	좌 동	50	좌 동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평가년도 포상실적	좌 동	0~10	좌 동
			4.2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실적	좌 동	0~80	좌 동
			4.3 평가년도 시정조치·경고처분 실적	좌 동	0~20	좌 동
		A.5 종합화	5.1 종합감사지원 실적	항목이동(A.5.1→A.1.3)	0~10	—
		A.6 고용안정화	6.1 고용안정 노력도	항목이동(A.6.1→A.2.6)	0~30	—
	A.5 전문성향상 지원실적	신 규 지 표		5.1 전문성 향상 지원 실적	신설	0~20
B 업무성과	소 계			600	600	
	B.1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충실성 (400)	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	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 계획의 적정성	50	좌 동	
		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좌 동	50	좌 동	
		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여부	좌 동	100	좌 동	
		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좌 동	100	좌 동	
	B.2 재해감소 (100)	2.1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 사망만인율 감소성과	2.1 업무상 재해율 감소성과	100	30	
			2.2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7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	3.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좌 동	100	좌 동	
		3.2 자율검사 우수사례	좌 동	100	좌 동	
	가 감 점	B.4 수행사업장의 중 대 재 해 발생	4.1 검사대상품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삭 제	0~100	—
B.4 자율검사 신뢰도		신 규 지 표		4.1 자율검사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	신설	0~20

IV. 2019년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지표(안)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취득점수
합 계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60)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20	
			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1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4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60	
			2.2 검사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2.3 검사원 외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30	
			2.4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30	
			2.5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60	
			2.6 고용안정 노력도	3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00)	3.1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20	
			3.2 유지·관리의 적정성	30	
			3.3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 활용 실적	5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평가년도 포상실적	0~10	
			4.2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실적	0~-80	
			4.3 평가년도 시정조치·경고처분 실적	0~-20	
		A.5 전문성향상 지원실적	5.1 전문성 향상 지원 실적	0~2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충실성	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의 적정성	50	
			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 서류 관리	50	
			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100	
			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100	
	B.2	재해감소 (100)	2.1 업무상 재해율 감소 성과	30	
			2.2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7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	3.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100	
			3.2 자율검사 우수사례	100	
	가 점	자율검사 신뢰도	4.1 자율검사 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	0~20	

운 영 체 계

A.1. 운영관리체계 [60점]

세부평가 A.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운영방침과 운영표준의 필수사항을 모두 수립·보유하고 있는 경우			☐ 3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20	
		2가지 누락된 경우	☐ 10	
		3가지 누락된 경우	☐ 5	
		4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대상기관의 운영방침과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표준 수립 여부를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수립·보유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 운영방침 확인항목 ① 기관의 추진전략 및 목표(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을 감소 목표 포함), ② 사업장의 재해분석(통계), ③ 직원 운용계획, ④ 사업장 관리계획, ⑤ 기술자료 제작·배포계획, ⑥ 직원 및 사업장 교육계획, ⑦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⑧ 사업평가 계획 - 운영표준 확인항목 ① 장비관련 운영지침(장비 검교정), ② 검사업무수행 지침 (매뉴얼), ③ 기록물(문서) 관리 관련 지침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 등록일자를 포함한 문서로 문서등록 대장 등에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u>이하 평가 문항에서 “문서화”란 동일한 의미를 뜻함.</u>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연간 운영계획, 내부 지침 또는 매뉴얼 등 운영 표준				

운 영 체 계

A.1. 운영관리체계 [60점]

세부평가 A.1.2		부서별·개인별 업무관리체계		배점 :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 체계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0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수행이 미흡한 경우			□ 5	
	부서·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 평가대상기관의 부서별·개인별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책임과 권한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업무관리체계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주요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관의 조직도, 개인별 업무분장, 검사 관련 위임전결규정 등 확인					
○ 평가 기준					
- 업무분장은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의 성명, 직급, 부서 등을 기재하고, 분담하게 된 업무사항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관리체계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검사원 퇴사일 또는 신규 입사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업무분장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조직도, 업무분장, 기관 홈페이지 또는 홍보자료 등					

운 영 체 계

A.1. 운영관리체계 [60점]

세부평가 A.1.3		종합기술지원 체계 구축	배점 : 1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종합기술 지원 체계구축	동일분야간 종합기술 지원실적(건) x 1점 + 타 분야간 종합기술 지원실적(건) x 2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기관의 제한된 역량 극복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의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계약서 및 관련서류(협약서 등), 평가대상기간에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기구 검사 결과서 및 기술 지원 결과 보고서 등의 시행 결과물 등을 통해 종합 평가			
· 계약 및 협약 후 결과물이 없는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			
· 심사서 및 결과서 등에 단순히 실시결과만 기재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1건의 검사 건을 1건으로 산정			
- 동일분야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			
- 타 분야 : 안전보건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에 등록·지정된 기관 및 타 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등			
·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는 제외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컨소시엄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관련 서류, 시행결과 보고서 등			

세부평가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배점 : 6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전문인력 추가확보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 60
		40점 이상 50점 미만	☐ 50
		30점 이상 40점 미만	☐ 40
		20점 이상 30점 미만	☐ 30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
	전문인력 추가확보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대상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제외한 추가 인력 확보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확보된 인력 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A.1.2 부서별·개인별 업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추가확보 검사책임자 수 x 15점 + 추가확보 검사직원 수 x 10점 - 산출예시 : 지정검사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지도사 1명, “마”항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 지도사 1명 (15점) + 검사직원 1명(10점) = 25점, 전문인력 추가확보 평가 점수 30점 ○ 평가 기준 - 추가 여유인력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검사책임자 및 검사직원으로 평가대상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 보조자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6개월 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직인력 포함하여 반영(임금지급대장, 검사결과서 서명 등 확인) - 단 추가확보 검사직원 1인당 점수는 기계분야 지정검사기관은 11점, 장치 및 설비분야는 15점, 국소배기장치분야는 20점을 부여 - 추가 여유인력의 업무가 업무분장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무업무 등 타 업무 전담자는 제외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류, 근로계약서, 검사결과서 등			

세부평가 A.2.2		검사원 내부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검사원 내부교육 훈련 계획 및 실시	내부 전문화 교육 실시횟수가 교육계획 횟수 대비	100% 인 경우	☐ 30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20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7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내부교육)을 위한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평가				
- 평가대상기간에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내부 전문화 교육 실시율 평가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내부 전문화교육 실시 횟수}}{\text{내부 전문화교육 계획 횟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교육훈련계획을 연간 또는 분기별, 월별 등으로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만 인정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내부 전문화교육 계획 횟수 : 분기별 2회 이상				
- 내부 전문화교육 실시 횟수 : 검사직원의 80% 이상 참석하고 실시한 내부교육 횟수 (단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80%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				
- 내부 전문화교육 계획 횟수 대비 참여 횟수가 50% 미만인 직원이 있을 때에는 1단계 하향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주요 평가내용	- 교육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만 교육 실시 횟수로 인정 -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타 법에 의거 실시하는 내부 법정교육(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제외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교육결과, 직원명부 등

세부평가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검사직원 외부교육 훈련계획 및 실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검사직원 수가 전체 검사직원 수 대비	80% 이상인 경우	☐ 30	
		70이상 80% 미만인 경우	☐ 20	
		60이상 70% 미만인 경우	☐ 10	
		6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외부교육)을 위한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검사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평가				
- 평가대상기간에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외부 전문화 교육 이수율 평가				
- 검사직원별 외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이수증) 확인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외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검사직원 수}}{\text{전체 검사직원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교육훈련계획을 연간 또는 분기별, 월별 등으로 별도로 수립한 경우에만 인정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 전체 검사직원 수 : 법정인력 및 추가 여유 인력을 포함한 전체 검사직원 수				
· 평가대상기간에 6개월 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퇴사직원을 포함				
· 사무업무 전담자 등 타 업무 전담자 제외				
- 외부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검사원 수				
· 16시간 또는 3일 이상 외부 전문화 교육(인터넷교육 포함)을 이수한 검사직원				
· 16시간 미만의 교육은 수강시간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에 검사원별 수강시간이 16시간 미만일 경우 불인정				

주요 평가내용	- 외부 전문화 교육 · 법적으로 등록된 외부교육기관에서 개설된 안전보건관련 교육 이수시 실적 인정 · 직무 수행에 보조적인 교육(CS 교육, 강사전문과정, 통계, 기업진단 등)도 포함 · 평가 대상기관이 고용노동부 등에 지정된 교육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교육은 실적에서 제외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및 수료증(이수증), 직원명부 등

세부평가 A.2.4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실적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검사직원 전원이 참여하여 활동이 이루어짐		☐ 30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검사직원의 70% 이상 100% 미만이 참여하여 활동이 이루어짐		☐ 20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검사직원의 70% 미만이 참여하여 활동이 이루어짐		☐ 10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검사직원에 대한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실적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 평가대상기간에 계획 및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 ○ 평가 기준 - 자체적 활동은 평가대상기관 자체 기술토론회, 자체교육 등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함. - 참여인원 산정시 검사책임자는 제외함 - 자체 교육에 대해서는 A.2.2.1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부교육)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인정 가능 - 자체 기술토론회는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문서 등 증빙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내부교육 일지, 기술토론회 계획 및 실시 결과 문서 등			

세부평가 A.2.5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배점 : 6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법정장비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상태가	100% 이상	☐ 60
		75% 이상 100% 미만	☐ 40
		50% 이상 75% 미만	☐ 20
		50% 미만	☐ 0
평 가 취 지			
○ 장비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에 대한 검사직원의 이해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검사직원의 법정장비 사용 및 교정방법 숙지 정도 평가 - 검사직원 2명 및 법정장비 4종 선정 - 선정된 장비의 사용법 및 자체 교정방법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장비의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 횟수}}{8\text{회}} \times 100$ ○ 평가 기준 - 사용법은 알고 있으나 자체 교정법을 모르는 경우 숙지횟수 불인정 예) 평가자 1은 4종류 장비의 사용법 및 교정방법을 모두 알고 평가자 2는 1종류 장비사용법은 알고 있으나 교정방법을 모르는 경우 [4회(평가자 1) + 3회(평가자 2)] ÷ 8회 = 87.5%, “40점”으로 평가 - 평가 장비의 매뉴얼(사용법과 자체 교정) 미보유시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 ※ 매뉴얼에 자체 교정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뉴얼 미보유로 평가 (자체 교정이 불가능한 장비는 제외) - 장비 미작동시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장비 사용매뉴얼, 평가자 사용 및 교정방법 숙지 결과 등			

세부평가 A.2.6		고용안정 노력도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고용안정 노력도	검사원 중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	☐ 30
		70% 이상 80% 미만	☐ 20
		60% 이상 70% 미만	☐ 10
		50% 이상 60% 미만	☐ 5
		50% 미만	☐ 0
평 가 취 지 ○ 검사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규직 채용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전체 검사원 대비 정규직 비율을 산출하여 고용안정 노력도 평가 - 평가대상기간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한 검사원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 대상기관의 검사원 현황 및 개인별 근로계약을 제출받아 평가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정규직 검사원 수}}{\text{전체 검사원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심사원) 제외 ※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검사원 현황, 개인별 근로계약서 등			

세부평가 A.3.1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배점 : 2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추가장비 확보 노력도	타 분야 법정장비(종) x 5점 + 기타 장비(종) x 3점		_____점
평 가 취 지 ○ 업무 수행 시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확보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타 분야 법정장비(종) x 5점 + 기타 장비(종) x 3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타 분야 :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등 ○ 평가 기준 - 법정장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다기능 장비는 법정장비로 판단 -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추가 장비는 1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 해당 장비 구매실적 및 실물이 없는 경우 미보유로 평가(계산서 확인) - 타 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관의 경우 해당분야 필수장비는 제외 - 추가 장비가 장비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될 경우 5점 감점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장비 보유현황, 추가장비 구매실적(계산서 발행 기준)			

세부평가 A.3.2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적정성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유지·관리 적정성	장비운용(관리) 지침, 장비별 이력카드가 모두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		☐ 30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있고, 장비별 이력카드 작성 또는 검·교정 중 1개 분야가 누락된 경우		☐ 20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있고, 장비별 이력카드 작성과 검·교정 모두 누락된 경우		☐ 10
	장비운영(관리) 지침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 검사장비의 유지·관리상태 적정성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운용(관리) 지침 및 장비별 이력카드 보유여부 및 세부내용 확인 - 장비별 검·교정을 실시한 증빙서류 확인 ○ 평가 기준 - 장비운용(관리) 지침에 ① 관리방법, ② 보유 장비 현황, ③ 검·교정 대상 및 주기 등 포함 여부 확인 · 해당 내용 중 1가지 이상 없는 경우 장비운용(관리) 지침이 없는 것으로 평가 - 검·교정대상 장비 : 법정장비 및 추가 확보 장비 · 장비의 검교정 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2015.10.30.)」 “KOLAS-G-013 교정 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 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검교정 주기가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초과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검교정이 장비 보유대수 기준 5% 이상 누락된 경우 해당항목 누락으로 평가 - 평가대상기간에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장비는 검·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장비운용(관리) 지침, 검·교정 실적(증명서), 검·교정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장비별 검교정 주기

순번	장 비 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지정검사	교정분류번호	교정주기
1	와이어로프테스터	○	○	○	20203	12
2	회전속도측정기	○	○	○	30203	12
3	진동측정기	○		○	60303	12
4	경도계	○			21003	12
5	로드셀(5톤 이상)	○	○	○	20202	12
6	분동(0.5톤 이상)	○	○	○	20116	24
7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0234	12
8	비파괴시험장비(UT,MT)	○	○	○	10234	12
9	트랜시트	○	○		10311	12
10	표면온도계	○	○	○	50204	12
11	절연저항측정기	○	○	○	40214	12
12	클램프메타	○	○		40302	12
13	만능회로시험기	○	○	○	40419	12
14	접지저항측정기	○	○	○	40205	12
15	레이저거리측정기	○	○		10208	24
16	수준기	○	○	○	10311	12
17	정지성능측정장치	○	○	○	30106	24
18	소음측정기	○	○	○	60106	12
19	수압시험기		○	○	20411	12
20	표준압력계		○	○	20411	12
21	안전밸브시험기구		○	○	20411	12
22	산소농도측정기		○		90103	12
23	가스농도측정기		○	○	90103	12
24	가스누설탐지기		○	○	90103	12
25	열선풍속계		○	○	20901	12
2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40113	12
27	분진측정기			○	90103	12
28	풍속계			○	20925	12
29	라인스피드미터			○	30204	12
30	조도계			○	70101	12
31	연소가스분석기			○	90103	12
32	틈새게이지			○	10211	12

세부평가 A.3.3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실적		배점 : 5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실적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 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50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기록 누락이	3% 미만인 경우		☐ 40
		3% 이상 5% 미만인 경우		☐ 30
		5% 이상 7% 미만인 경우		☐ 20
		7% 이상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검사업무 수행 시 법정장비 및 추가 확보 장비의 활용여부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업무 수행 사업장(3개 이상)의 검사결과서를 선정하여 평가(최소 60개 이상 확인) - B.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항목과 B.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와 병행 평가 - 법정장비 외 장비사용 실적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기준 - 검사결과서 중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기록이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평가 - 검사설비와 검사결과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평가 - 법정장비 외 추가 장비 활용실적 확인은 검사결과서, 안전검사 대상 장비 기술지원 등 해당 장비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인정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검사결과서,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사용 실적 관련 서류 등				

세부평가 A.4.1		평가년도 포상실적	배점 : 1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평가년도 포상실적	평가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으로부터 기관 또는 소속 수행요원에 대한 포상실적이 있을 시 10점까지 가점 부여		_____ 점
평 가 취 지 ○ 평가년도 기관 또는 검사원에 대한 포상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년도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 보건공단 이사장”등으로부터 기관 또는 검사원에 대한 포상실적을 확인하여 가점 부여 - 평가대상 기관명(대표자 및 수행요원) 기준으로 포상실적 판단 · 포상에 기재된 기관명이 평가대상 기관명과 다를 경우 불인정 · 불인정 예 : 평가기관명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포상기관명 안전보건공단 ○ 평가점수 부여 : 합산하여 최대 10점 이내 가점 부여 ① 대통령 : 5점 ② 국무총리 : 4점 ③ 고용노동부장관 : 3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2점 ⑤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 인증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군,구) 민간단체상(안전 분야 학회에 한함) : 1점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포상 관련 증빙자료 등			

세부평가 A.4.2		평가년도 행정처분 실적	배점 : -8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평가년도 업무정지 처분실적	평가년도 업무정지에 대한 감점 부여		_____점
평 가 취 지 ○ 평가년도 업무정지에 대한 감점 부여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년도에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부여 -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평가대상기관과 일부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 기간만 감점 (1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일 / 30 으로 환산하여 감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부여 - 업무정지 처분 : 업무정지 1개월 당 - 15점 (최대 - 80점 부여)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업무정지, 시정조치, 경고처분 등 증빙자료			

세부평가 A.4.3		평가년도 시정조치, 경고처분 실적	배점 : -2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평가년도 시정조치 처분실적	평가년도 시정조치, 경고처분에 대한 감점 부여		_____ 점
평 가 취 지 ○ 평가년도 시정조치, 경고처분에 대한 감점 부여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년도에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부여 -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경고 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 평가점수 부여 - 시정조치, 경고처분 : 건당 - 2점 (최대 - 20점 부여)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업무정지, 시정조치, 경고처분 등 증빙자료			

세부평가 A.5.1		전문성 향상 지원 실적	가점 : 2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전문성 향상 지원실적	전문성 향상 활동 총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20
		10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10
		2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5
		2점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심사원·검사원의 전문성 향상(학회 참석 및 자격취득 등)을 위한 지원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아래의 실적을 각각 평가한 후 ①+②+③ 합산하여 평가점수 부여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안전관련 외부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 · 소속인력의 60% 이상이 평가년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10점” · 소속인력의 30% 이상 60% 미만이 평가년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6점” · 소속인력의 30% 미만이 평가년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2점” ※ 세미나, 학술대회 주관기관의 직인이 있는 참석확인증만 인정(학회 연회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② 자기개발 실적 · 지정 인력 중 40% 이상 상위 학위 취득 / 재학 및 국가기술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0점” · 지정 인력 중 20% 이상 상위 학위 취득 / 재학 및 국가기술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5점” ※ 해당 기관에 지정인력으로 등록된 기간 중 취득 / 재학한 경우만 인정 ③ 자기개발 지원 실적 · 업무 관련 상위 학위 취득, 국가기술자격취득, 외국어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적 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이 있을 경우 “8점” · 해당 지원 실적 등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재학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통장사본 등			

업 무 성 과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400점]

세부평가 B.1.1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계획	배점 : 5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 검사수행 계획	검사주기를 준수하여 모든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에 대한 연간 검사수행 계획을 수립한 경우		☐ 50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에 대한 연간 검사수행 계획이 누락된 경우		☐ 25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에 대한 연간 검사수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연간 검사수행 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 및 검사 일정이 포함된 연간 검사수행계획을 제출받아 평가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접수처리대장과 비교하여 누락 사업장 확인 ○ 평가 기준 - 연간 검사수행 계획 중 1개 이상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 계획이 누락된 경우 누락으로 평가하고 “25”점 부여 - 연간계획 수립시기 이후 위탁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의 검사수행계획은 제외 - 검사수행계획 수립 및 검사 시 검사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자율검사 프로그램 주기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주기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 마다 검사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자율검사프로그램 사업장 리스트, 연간 검사계획 등			

업 무 성 과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400점)

세부평가 B.1.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 서류 관리		배점 : 5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점수 ____ 점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결과 기록서류 관리	① 검사서류 보존 체계	검사서류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20	
		검사서류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② 검사서류 보존 누락 여부	누락된 검사결과서가 없는 경우	☐ 20	
		누락된 검사결과서가 10% 미만인 경우	☐ 10	
		누락된 검사결과서가 10% 이상인 경우	☐ 0	
	③ 검사서류 2년 보존년한 준수	검사결과서를 2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	☐ 10	
검사결과서를 2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서류의 분류, 보존상태의 적정성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수행한 3개 사업장의 검사결과서를 선정하여 평가(최소 60개 이상 확인)				
- 검사대상품의 수와 검사결과서의 수를 비교하여 보존 누락여부 확인				
- 검사결과서의 보존상태 및 보존년한 평가				
- ①,②,③항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 기준				
- 검사서류 보존의 체계성				
· 자체 기준에 따라 단위별 문서철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함				
· 문서철에는 문서철 제목, 문서철 내 색인 등을 통해 검사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함				
· 전자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폴더정리 등의 형태로 관리되어야 함				
- 검사서류의 누락 : 검사대상품과 검사 결과서를 비교하여 일치여부 평가				
- 보존년한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비교하여 검사 결과서 2년 보존 여부 확인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검사 결과서 등				

업 무 성 과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400점]

세부평가 B.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배점 : 10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여부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	☐ 100
		1건 미준수한 경우	☐ 70
		2건 미준수한 경우	☐ 40
		3건 이상 미준수한 경우	☐ 0
평 가 취 지 ○ 자율검사프로그램 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 규정 준수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검사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준수 여부 사전 평가 (①,②,③,⑤,⑥) - 현장 확인을 통해 자율검사프로그램 준수 여부 확인 (④,⑤) ○ 평가 기준 -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확인항목 ① 검사기준 ② 검사주기, ③ 검사결과서에 합부 판정 기재 여부, ④ 검사합격 표시방법, ⑤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발견시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여부, ⑥ 기계·기구별 검사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결과 기록·관리 여부 - 평가 예시 : 검사기준 미준수 3건, 검사주기 미준수 5건 확인시 ①,② 항목 규정 2건 미준수로 “40점” 부여 - ③,④,⑤ 항목은 B.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시 병행 평가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검사결과서, 사업주 통보용 공문 등			

업 무 성 과

B.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400점]

세부평가 B.1.4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실시의 적정성		배점 : 10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실시의 적정성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결과서와 불일치, 검사항목 누락이	없는 경우	☐ 100	
		1건 이상 4건 미만인 경우	☐ 70	
		4건 이상 7건 미만인 경우	☐ 40	
		7건 이상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기준·검사방법·검사항목 준수 노력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현장방문을 통해 검사실시 대상품과 검사결과서의 비교를 통하여 검사기준 준수, 검사결과서와 일치, 검사항목의 누락여부 확인				
- 현장은 최소 2개소 이상 방문하여 평가 실시				
- 현장방문시 건설현장 1개소가 필히 포함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다만 해당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한 모든 건설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평가 기준				
- 검사실시 대상품별로 검사결과서를 비교하여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결과서와 불일치, 검사항목 누락이 1개 이상 확인되면 누락 1건으로 평가				
- 평가 예시 : 기계식 프레스 3호기 검사기준 미준수 1건, 검사항목 누락 2건이 확인되고, 천장주행 크레인 2호기 검사항목 누락 2건이 확인된 경우 누락 2건으로 평가하고 “70점”부여				
- B.1.3 자율검사 관련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병행 평가 실시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현장확인 및 검사결과서 등				

업 무 성 과

B.2. 재 해 감 소 [100점]

세부평가 B.2.1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을 감소 성과		배점 : 3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업무상 재해율 감소성과	전년 대비 평가년도 검사사업장 업무상 재해율	5% 이상 감소	☐ 30	
		3% 이상 5% 미만 감소	☐ 20	
		3% 미만 감소	☐ 10	
		증가	☐ 0	

평 가 취 지
○ 수행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율 감소성과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현황 및 평가 대상기관에서 평가년도 수행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공표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검사대상품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율 산출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평가년도 업무상 재해율} - \text{평가전년도 업무상 재해율}}{\text{평가전년도 업무상 재해율}} \times 100$ ○ 평가 기준 - 재해자 수 : 산업재해 통계상 재해내용 등은 관계없이 “기인물 상세”가 검사 대상품인 재해자를 기준으로 산출 - 평가년도 수행사업장의 재해자가 없는 경우는 “30”점 부여 - 지정검사 대상 분야에 한정하여 평가

주요 평가내용

- 산업재해 통계상 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프레스	상세정보 부족한 프레스 및 전단기
	확동클러치프레스
	마찰클러치프레스
	액압프레스
	기타 프레스 및 전단기
전단기	전단기
크레인	천장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브크레인
	겐트리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상세정보 부족한 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기타승강기
	건설용리프트
압력용기	저장탱크, 용기
	반응기
	열교환기류
곤돌라	곤돌라
원심기	탈수기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출기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체인 컨베이어
	구동식 로울러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슬랫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수행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업 무 성 과

B.2. 재 해 감 소 [100점]

세부평가 B.2.1.2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성과		배점 : 7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감소성과	전년 대비 평가년도 검사사업장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5% 이상 감소	☐ 70	
		3% 이상 5% 미만 감소	☐ 50	
		3% 미만 감소	☐ 30	
		증가	☐ 0	
평 가 취 지				
○ 수행사업장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현황 및 평가 대상기관에서 평가년도 수행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공표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검사대상품에 기인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평가년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 \text{평가전년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text{평가전년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times 100$				
○ 평가 기준				
- 사망자 수 : 산업재해 통계상 재해내용 등은 관계없이 “기인물 상세”가 검사 대상품인 사망자를 기준으로 산출				
- 평가년도 수행사업장의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70”점 부여				
- 지정검사 대상 분야에 한정하여 평가				
- 국소배기장치 분야로 지정받은 기관은 안전검사 실시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의한 재해를 대상으로 함. 단 산업재해 통계상 국소배기장치는 기인물 상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의 재해개요를 기준으로 국소배기장치에 기인한 재해를 별도로 확인하여 재해자 증감을 확인함.				

주요 평가내용

- 산업재해 통계상 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안전검사 대상품	기인물 상세
프레스	상세정보 부족한 프레스 및 전단기
	확동클러치프레스
	마찰클러치프레스
	액압프레스
	기타 프레스 및 전단기
전단기	전단기
크레인	천장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브크레인
	겐트리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상세정보 부족한 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기타승강기
	건설용리프트
압력용기	저장탱크, 용기
	반응기
	열교환기류
곤돌라	곤도라
원심기	탈수기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사출기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체인 컨베이어
	구동식 로울러 컨베이어
	스크류 컨베이어
	슬랫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수행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업 무 성 과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점)

세부평가 B.3.1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배점 : 10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사업장 만족도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_____점
평 가 취 지 ○ 업무수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현황 및 평가 대상기관에서 평가년도 수행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점수를 평가결과에 반영 - 예시 : 만족도 조사 점수 “93”점 → 수행사업장 만족도 평가 “93”점 ○ 평가 기준 - 평가 대상기관의 소속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 만족도 조사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정검사기관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부여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외부 용역기관 평가결과 반영			

업 무 성 과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200점)

세부평가 B.3.2		자율검사프로그램 우수사례	배점 : 10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프로그램 우수사례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5종류 이상 실시한 경우		☐ 100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4종류 이상 실시한 경우		☐ 80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3종류 이상 실시한 경우		☐ 60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2종류 이상 실시한 경우		☐ 40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1종류 이상 실시한 경우		☐ 20
	자율검사 우수사례(활동) 정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평가 대상기관에서 추진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를 평가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정성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년도에 실시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실행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평가 기준에 명시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실행 건수 x 20점			
○ 평가 기준			
① 수행사업장에 대한 검사 대상품에 의한 재해사례를 책자로 제작·보급한 실적(1회 이상)			
② 평가 대상기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캠페인 실적(4회 이상)			
※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가 실적은 제외			
③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여(4회 이상)			
④ 수행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사대상품에 의한 재해예방 집체교육 실시(2회 이상)			
※ 교육 계획 및 결과에 예산, 대상, 일정,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⑤ 평가기관(기관장) 명의의 안전관련 신문기고 등 언론매체 홍보 실적(2회 이상)			
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실적(4회 이상)			
⑦ 수행 사업장내 안전관련 현수막 게시 실적(5개소 이상)			
⑧ 지자체 및 지역 안전보건관련 협의회에 안전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위촉장이 있는 경우)			
⑨ 안전검사 위탁사업장-기관간 간담회 개최(3회 이상)			
⑩ 기타 기술지도 사업(영업)과 무관하고 위 내용과 동등 이상의 활동 실적 등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정성평가 보고서, 재해예방 우수사례(활동) 증빙서류 등			

세부평가 B.4.1		자율검사 신뢰도		가점 : 20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평가결과
자율검사 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	검사대수 대비 불합격률이	1% 이상인 경우	☐ 20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 10	
		0.5% 미만인 경우 0% 초과인 경우	☐ 5	
		0% 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자율검사 프로그램 불합격 판정률을 통해 검사결과 신뢰도 확보				
주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전체 검사대수 대비 불합격 판정 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frac{\text{부적합 판정 수}}{\text{전체 검사 대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전체 검사 대수 : 평가년도 실시한 검사 대수 - 부적합 판정 수 :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건을 사업주에게 통보한 건만 인정 - 크레인, 리프트 등 1년 미만의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주기를 가지는 검사 대상품의 경우 평가년도 검사 대수 산정시 1대로 산정 (예시 : 1년에 2회 검사를 실시하는 천장 크레인의 경우 검사 대수 산정시 1대로 산정)				
현장 확인사항(증빙자료) ○ 사업장별 검사현황, 검사결과서 등				